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
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
대통령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교육부 등 2개 기관 소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경직적인 규제체계로 발생하는 신기술·신산업 성장의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 또는 서비스 등의 신속한 시장진출 및 정부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산업 또는 서비스 등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3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(안 제1조)

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목재제재업 중 제2종을 경영하기 위해 임산가공기능사 포함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산가공기능사 1명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두도록 함.

나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(안 제2조)

1)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를 중소기업,

실험실공장, 연구소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회사도 포함되도록 확대함.

2)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대함.

다.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(안 제3조)

국가가 실시하는 정원의 품질·운영·관리에 대한 정량적 평가기준을 유연화하기 위하여 정원과 연계한 지역협력사업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정성적 평가기준을 평가 항목에 추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
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1조(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목재의
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2 제2호 표의 제2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종	합판 등 목질 판 상제품의 생산	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산가공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명 이상	5천만원 이상	사무실
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	-----

제2조(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
정)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
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회사

제4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
전의 제1항)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연구개발 업무

제3조(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5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정원과 연계한 지역협력사업이 있는지 여부
6.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4조(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)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”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4조(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)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회사</u>
제46조(이익배당 사용업무) ① (생략) 1. (생략) <u>2. 연구개발 기획 업무</u> 3. (생략)	제46조(이익배당 사용업무) (현행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<u>2. 연구개발 업무</u> 3. (현행과 같음)

수목원 ·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의5(정원의 품질 및 운영 · 관리 평가기준 등)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 · 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② · ③ (생략)	제8조의5(정원의 품질 및 운영 · 관리 평가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정원과 연계한 지역협력사업이 있는지 여부</u> 6. <u>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3 - 6703
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	
연 락 처	(042) 481 - 4283